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할 경우  
피고인의 권리<sup>1)</sup>

I. 사건개요

이 사건은 2020년 6월 11일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이하 “협약”)’ 제34조에 따라 멕시코 국적의 Ismael Sanchez-Sanchez(이하 “청구인”)가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서 비롯되었다. 청구인은 만약 자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것이 협약 제3조<sup>2)</sup>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영국 Wandsworth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청구인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영국에서 체포되었다. 미국 법무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미국을 근거지로 한 공모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멕시코의 마약 운반 조직의 공동 수장으로 여겨졌다.

청구인의 혐의는 2017년 1월에 몰수된 마리화나 2,613kg을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것과, 공모자들이 마약과 돈을 보관하기 위해 이용한 조지아 주 샌디스프링에 있는 아파트에서 펜타닐을 첨가한 헤로인 14kg과 펜타닐 약 430g을 몰수당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기소장에는 한 공모자가 펜타닐을 사용하다 사망했다는 사실이 나타나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아는 한 청구인은 전과가 없었다.

청구인의 범죄인 인도 심리는 2019년 1월 24일 영국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재판 전 환경, 선고 후 구금, 그리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

1) *Sanchez-Sanchez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2854/20 (2022. 11. 03).

2) 유럽인권협약 제3조

누구도 고문 또는 반인륜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

선고 받을 실질적인 위험성을 근거로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협약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판사는 청구인이 재판 전 환경과 선고 후 구금으로 인해 협약 제3조가 위반될 실질적인 위험성을 증명했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지방판사는 종신형의 선고가 감형 불가능(irreducible)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선고 후에 대통령 사면이나 형집행정지(compassionate release)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죄 판결로 인해 협약에 의한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성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청구인은 항소했고,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다. 고등법원 또한 종신형이 감형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했고, 청구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본 재판소에서,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영국 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II. 결정요지

### 1. 국내에서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

고문과 반인륜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분명한 조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협약 제3조는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따른다. 이 조항에는 예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제15조에 따라 어떠한 위반도, 심지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sup>3)</sup> *Kafkaris v. Cyprus* 결정<sup>4)</sup>에서, Kafkaris는 사이프러스(Cyprus)에서 계획적인 살인의 세 가지 죄목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종신형을 부과 받았다. 본 재판소는 성인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이 그 자체로 금지되거나 제3조 또는 협약의 다른 조항에 불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sup>5)</sup> 동시에 본

3)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8 January 1978, § 163, Series A no. 25; *Chahal v. the United Kingdom*, 15 November 1996, § 779,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Selmouni v. France* [GC], no. 25803/94, § 95, ECHR 1999-V; *Al-Adsasni v. the United Kingdom* [GC], no. 35763/97, §59, ECHR 2001-XI, and *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no. 36378/02, § 335, ECHR 2005-III.

4) *Kafkaris v. Cyprus* [GC], no. 21906/04, ECHR 2008.

재판소는 성인에게 감형될 수 없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이 협약 제3조하에 서의 쟁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본 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주된 쟁점은 종신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종신형이 법률상(*de jure*) 그리고 사실상(*de facto*)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은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sup>6)</sup> 따라서 본 재판소는 가석방 가능성이, 가석방 결정이 국가수반의 재량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형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한다.<sup>7)</sup> 이후 본 재판소는 *Iorgov v. Bulgaria* 결정<sup>8)</sup>에서 대통령에 의한 사면이나 감형 형식의 처분에 대한 기대가 가석방 가능성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고 확인했다.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결정<sup>9)</sup>에서 대재판부는 해당 쟁점에 대해 재논의했다. 해당 결정의 청구인들은 종신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였으며, 영국에서 살인으로 인해 유죄 선고 후에 ‘종신명령(whole life order)’을 받은 상태였다. 그 청구인들은 종신명령이 협약 제3조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본 재판소는 만일 종신형이 “중대하게 부당(grossly disproportionate)”하거나 감형될 수 없다면 협약 제3조를 위반한다고 서술했다.<sup>10)</sup> 후자에 대하여 본 재판소는 형벌의 예방 목적과 갱생 목적을 참작하여 “감형 가능성” 그 자체에서 수감자의 갱생에 초점을 둔 심사(review) 방법으로 주안점을 옮겼다.<sup>11)</sup> 주어진 사건에서 어떻게 종신형이 감형될 수 있다고 볼지에 대해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수립했다.<sup>12)</sup>

---

5) *Kafkaris v. Cyprus* [GC], no. 21906/04, § 97, ECHR 2008.

6) *Kafkaris v. Cyprus* [GC], no. 21906/04, § 97, ECHR 2008.

7) *Kafkaris v. Cyprus* [GC], no. 21906/04, § 98, ECHR 2008.

8) *Iorgov v. Bulgaria*, no. 36295/02, §§ 51-60, 2 September 2010.

9)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6069/09 and 2 others, ECHR 2013 (extracts).

10)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6069/09 and 2 others, §§ 102, 119-122, ECHR 2013.

11)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6069/09 and 2 others, § 109, ECHR 2013.

12)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6069/09 and 2 others, §§ 119-122, ECHR 2013.

“119. 앞선 근거들로 인해 본 재판소는, 지속되는 수감의 합법적인 형벌의 근거를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종신형 수감자의 변화가 중대한지 그리고 형의 집행 중에 갇생을 향한 진전이 생겼는지에 대해 자국 정부가 고려하도록 하는 심사의 의미에서, 종신형에 관해 제3조가 형의 감형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120. 하지만, 본 재판소는 형사 정책과 형의 선고에 관한 사안에서 계약국(Contracting State)에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판단의 재량(margin of appreciation)과 관련하여 심사가 따라야 하는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인) 그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본 재판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같은 이유로, 본 재판소는 심사를 수행할 시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본 재판소는 비교법 및 국제법 자료들이 종신형이 선고된 후 25년 이내의 심사 및 이후 추가적인 정기 심사를 보장하는 전용 절차에 명확한 지지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121. 결정이 이렇더라도, 국내법이 이러한 심사의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종신형이 협약 제3조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122. 비록 이 필수적인 심사가 선고가 내려진 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장래의 일정이더라도, 종신형 수감자로 하여금 선고에 부가된 법적 조건이 이와 관련된 제3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해지지 않은 기간의 형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과 협약 제34조 조문의 의미 내에서 희생자의 신분에 관한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만일 형의 선고가 국내법 하에서 감형이 불가능하다면, 수감자가 그의 갇생을 근거로 가석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느 불특정한 날에 도입될지 알지 못한 채로, 그의 갇생을 위해 형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종신형 수감자는 선고 시점에서 가석방이 고려되기 위해 그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선고의 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는 요구되는지를 포함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이 종신형의 심사를 위한 방법이나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어느 정도 수감생활을 한 후가 아니라 종신형을 선고한 시점에 제3조의 위반이 발생하게 된다.”<sup>13)</sup>

*Murray v. the Netherlands* 결정<sup>14)</sup>에서, 본 재판소는 심사 방법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서 필요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본 재판소는 심사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포

13)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6069/09 and 2 others, §§ 119–122, ECHR 2013.

14) *Murray v. the Netherlands* [GC], no. 10511/10, § 100, 26 April 2016.

함되어야 하고, 그 권리는 충분한 절차적 보장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관한 일반 원칙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체약국은 국제적 범죄 사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무는 협약 제3조에 따른 금지의 절대적인 본질을 존중할 국가의 의무보다 후순위에 있다.<sup>15)</sup> 본 재판소는 고문, 그리고 반인륜적이고 모멸적 대우와 처벌이 확실한 조문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체약국에 의한 범죄인의 인도는 협약 제3조하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범죄인을 학대를 받을 실질적인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중대한 근거가 있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로 보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체약국이 갖게 된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sup>16)</sup> 학대의 위협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본 재판소는 청구인을 목적 국가로 보내는 것에 대해 예상 가능한 결과를 조사해야 한다.<sup>17)</sup> 이를 통해, 본 재판소는 제3조의 요건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의 환경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입증책임에 관하여, 청구인이, 만일 청구된 수단이 시행된다면 제3조에 위배되는 대우를 받을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sup>18)</sup>

제기된 위협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에서의 잠재적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선고라면, 본 재판소는, *Vinter and Others* 결정에 앞서, 청구인이 중

---

15) *Khasanov and Rakhmanov v. Russia* [GC], nos. 28492/15 and 49975/15, § 94, 29 April 2022).

16)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7 July 1989, § 88, Series A no. 161; *López Elorza v. Spain*, no. 30614/15, § 102, 12 December 2017.

17) *F.G. v. Sweden* [GC], no 43611/11, § 120, 23 March 2016; *Saadi v. Italy* [GC], no. 37201/06, §130, ECHR 2008.

18) *F.G. v. Sweden* [GC], no 43611/11, § 120, 23 March 2016; *Saadi v. Italy* [GC], no. 37201/06, §129, ECHR 2008.

대하게 부당한 선고를 받을 현실적인 위험이 있거나, 또는 청구인의 지속적인 수감이 더 이상 합법적인 형벌의 근거를 정당화하지 못할 경우, 종신형이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감형될 수 없을 때에만 제3조의 쟁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sup>19)</sup> 따라서 형벌학적 정당화를 잃은 종신형을 살 위험이 제기된 범죄인 인도의 시점에, 청구인의 지속되는 수감이 더 이상 아무런 목적도 충족할 수 없는 시점이 오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sup>20)</sup>

*Vinter and Others* 결정에서, 본 재판소는, 자국 내에서의 종신명령과 관련하여, 종신형의 형벌학적 정당화가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심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Trabelsi* 결정<sup>21)</sup>에서, 본 재판소는 *Vinter and Others* 기준을 범죄인 인도 사건에 적용했다. 이 결정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절차 중 어떠한 것도,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할 때 수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는 객관적이고 사전에 수립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속되는 수감이 더 이상 합법적인 형벌의 근거를 정당화시키지 못할 만큼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심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인도가 협약 제3조를 위반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Vinter and Others* 결정은 범죄인 인도 사건이 아니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국내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고 형벌이 부과된 청구인의 법적 지위는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국내 선고의 심사 체계는 정부와 본 재판소에 비슷하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아직 유죄를 선고 받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내 상황과 비교해 매우 다른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잠정적인 예측, 즉 복잡한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원칙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서- 국내 상황에 적용하도록 고안된, *Vinter and Others* 결정에서 정립된 기준을 가장

---

19) *Harkins and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nos. 9146/07 and 32650/07, §§ 134 and 137-138, 17 January 2012.

20) *Harkins and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nos. 9146/07 and 32650/07, § 140, 17 January 2012.

21) *Trabelsi v. Belgium*, no. 140/10 ECHR 2014.

큰 범위인 범죄인 인도 상황에 적용하는데 주의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재판소가 *Vinter and Others* 결정에서 정립한 원칙은, 계약국이 종신형이 제3조를 위반하는 형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실질적인 의무와, 또한 보호장치에 그치지 않고 계약국에 의해 반인륜적이고 모멸적인 처벌의 금지가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를 수행하는, 관련된 절차적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이는 *Vinter and Others*의 완전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계약국이 협약하에서 제3국의 체계 미비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도록 한다. 본 재판소는 또한 계약국이, 국가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절차적 보호장치를 준수하는 수준을 평가할 목적으로 제3국의 관련 법령과 관습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본 재판소는 국내에서 협약 제3조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청구인이 청구 기간 동안 또는 원래 계획된 것보다 더 일찍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협약에 부응하는 심사 방법의 도입이 있을 때 까지 수감된 채로 남아있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수감의 합법적인 형벌학적 목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반면,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는 제3조의 위반을 발견하여 중대한 혐의를 가진 사람은, 범죄인 인도를 요청받은 국가에서 기소될 수 없거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국가가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판정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처벌받지 않고 도피하게 하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와 부합하는 결과가 아니다.<sup>22)</sup>

따라서 *Vinter and Others* 결정에서 정립된 원칙이 국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는 수정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수정된 접근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첫 단계에서 청구인이, 인도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을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

---

22) *López Elorza v. Spain*, no. 30614/15, § 111, 12 December 2017.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범죄인을 인도 받은 정부가 선고 시점에서부터 수감자의 갱생을 위한 발전이나, 수감자의 행동이나 다른 개인적인 상황을 근거로 석방의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심사 방법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 3. 상술한 원칙의 적용

청구인은 기소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이 “중대하게 부당”하다는 것은 주장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종신형이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감형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약 제3조를 위반할 것이라는 것만 주장했다. 따라서 앞선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인도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제시됐는지 본 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sup>23)</sup> 청구인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그에게 기소된 혐의가 반드시 종신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먼저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모든 관련된 감형 요소나 가중처벌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한다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정부에 청구인의 갱생에 대한 발전, 또는 행동이나 다른 관련된 개인적 상황에 의한 가석방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선고에 대한 심사 방법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첫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재판소는 자국 법원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본 재판소의 평가는 범죄인 인도가 아직 행해지지 않은 지금부터(*ex nunc*) 시작되는 반면,<sup>24)</sup> 영국 법원은 미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수행할 기회를 가졌었다. 지방판사는 정부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종신형이 2013년 모든 사건의 0.3%에서만 선고되고 같은 해 마약 거래 사건 중 1/3 미만의 사건에서 선고되는 등

23) *López Elorza v. Spain*, no. 30614/15, § 107, 12 December 2017.

24) *F.G. v. Sweden* [GC], no 43611/11, § 115, 23 March 2016



마약 거래 사건에서 드물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판사는 청구인이 어떠한 혐의에도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이 누적형 형벌(consecutive sentence)을 받을 확률이 적다고 말한 미국 연방검사(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AUSA)의 증거를 언급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망 전에 석방될 수 있는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청구인의 변호인은 미국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연방체계에서의 종신형(Life Sentences in the Federal System)”이라는 2015년 2월 보고서를 근거로 보통 누군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종신형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본 재판소가 적용하는 두 단계의 심사 중 첫 단계인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판사는 청구인이 종신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쟁점에 관한 본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5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거래 지침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의 상해가 마약을 사용해 발생했고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거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 마약 거래 범죄에 대한 종신형 선고를 분명히 가능하게 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의 공모자들 중 한 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더라도, 본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는 청구인이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양의 마약이 연루된 사건이나 법원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다른 양형 강화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도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청구인에 대한 혐의는 분명히 중대하고, 미국 법무부는 청구인이 미국 마약 유통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멕시코 마약 거래 조직의 공동 수장이라는 확신을 보여줬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청구인의 공모자들 중 7년에서 20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4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가장 높은 형을 선고 받은 두 명은 청구인과 동일한 마약 수입과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고, 자금 세탁을 포함해 청구인에게는 씌워지지 않은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 재판소는 청구인의 공모자들이 청구인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

지만 청구인과 완전히 비슷한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공모자들은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의심받지 않았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유죄를 인정하여 감형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재판부 심리에서 청구인은 자신과 비슷한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중 어느 누구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Findikoglu* 결정<sup>25)</sup>에 따르면, 청구인의 수감 기간은 미국 정부에 협력하는 것과 같이 재판 전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만일 청구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양형 기준 범위보다 적은 형량을 정당화하는 감형 요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는 진상조사 후에, 판사는 적절한 형을 결정할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선고된 형량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청구인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청구인이 제3조에서 금지하는 대우의 실질적인 위협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 사건 분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앞선 논의들은 본 재판소가, 청구인이 인도되더라도 협약 제3조가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청구인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 III. 결정의 의의

이번 결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범죄인 인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약 제3조는 고문 또는 반인륜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처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sup>26)</sup> *Vinter and Others* 결정은

25) *Findikoglu v. Germany* (dec.), no. 20672/15, § 39, 7 June 2016.

26)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6069/09 and 2 others, ECHR 2013.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국내 법원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번 결정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에 대해 두 단계 심사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만일 청구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서 종신형 선고 후에 수감자의 갱생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사망 전에 석방될 수 있는지를 해당 국가에서 증명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국가라도 유럽 국가로부터 범죄인을 인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